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제9호 관련
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6년 8월 28일
제안자: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공공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,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부담 의무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13조제3항 후단에 “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”를 신설함.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2항 후단에 “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”를 신설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생략) <신 설>	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<u>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.</u>	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</u> ④ (개정안과 같음)